

● **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-603호**

「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9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# **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제정(안) 행정예고**

### 1. 제정이유

제값 받는 거래환경 조성 및 납품대금 연동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‘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’ 제정 필요

### 2. 주요내용

가. 납품대금 연동의 의미: ‘납품대금 연동’ 및 ‘납품대금 연동제’ 정의 규정

나.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: 원재료·주요 원재료의 범위 및 판단기준, 연동제 적용 예외 사유 등

다.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: 원칙, 성실한 협의 의무, 약정서 법정 기재 사항, 특수한 형태의 계약 시 유의 사항 및 법 위반 사례 등

라. 탈법행위의 금지: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체결을 회피하는 행위, 미연동 합의 강요, 예외 사유의 조건으로 계약, 탈법행위 예시 등

마. 연동 약정 이행 의무: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의무,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, 서류 비치 등

바.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: 미연동 약정서 작성 방법, 미연동 약정서 작성 의무 없는 경우, 미연동 약정체결 후 수탁기업이 약정체결 요청 가능

사. 법령상 준수사항과의 관계: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금지,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금지, 발주자 증액에 따른 납품대금 증액 의무,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,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

### 3. 의견 제출

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30일까지 중소기업부장관(참조 : 불공정거래개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bluesky82@korea.kr

2) 주소 : (30121) 세종특별자치시 기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

3) 팩스 : 044-204-794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(전화: 044-204-7915)에 문의하여 주시기  
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“알림소식-법령정보-행정예고”에  
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